

예비심사 안건

의안번호	제 2013- 호
의 결 연월일	2013. 11. . (제 회)

의 결
사 항
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
신설·강화규제 심사안

제 출 자	중소기업청장 한정화
제출연월일	2013. 11. .

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	1
□ 요 약	1
II. 규제심사안	3
1. 창투사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신설	3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□ 요 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1.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 적 신용요건	○ 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창투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신설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위 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 사실이 없을 것- 채무 불이행으로 건전한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-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 가,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 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 계인 아닐 것⇒ (사유) 창업지원법 제10조제2항 제2호의2 개정(13.8) 사항을 반 영한 것이며, 유사입법례(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)를 참조하여 관련 규정 신설* (법령개정 내용) <u>대주주가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</u> <u>적 신용을 갖출 것</u>

II. 규제심사안

1. 창투사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신설

① 규제 신설 내용

(도입배경)

- 창투사가 대주주로 인해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
- 지난 6월 국회에서 창업지원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신설하고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

(추진방안)

법에서 위임된 창투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

(주요내용)

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주요 내용

- ①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 사실이 없을 것
- ② 채무 불이행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
- ③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,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아닐 것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 다만,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1. 최근 3년간 법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 금융관련 법령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조세법 처벌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. 다만, 법 제49조,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2.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</p> <p>3. 최근 5년간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</p>